

# 닭 검정요령

농수산부는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종축검정방법을 고시하였다.(농수산고시 제85-59호, 85. 11. 18) 이 중 닭 검정요령을 발췌 게재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의3규정에 의거 닭의 검정방법을 정하여 닭의 자질개량을 촉진하는데 있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검정”이라 함은 축산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업 등록에 필요한 종계의 확인검정을 말한다.
2. “능력검정”이라 함은 원종계 및 종계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3. “순계검정”이라 함은 닭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 보존하고 유전 능력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4. “경제능력검정”이라 함은 종계(Parent Stock)에서 생산된 실용계(Commercial Chick)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5. “순계”(P. L=Pure Line)라 함은 닭의 육종 또는 원종계(G. P. S)를 작출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으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닭을 말하며 “원종계”(G. P. S=Grand Parent Stock)라 함은 종계(P. 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닭을 말하고 “종계(Parent Stock)라 함은 실용계(C. C)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을 말하며 “실용계”(C. C=Commercial Ohick)라 함은 종계에서 생산된 닭을 말한다.

제3조(검정의 의무) 축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닭육종농장 및 외국으로부터 원종계 및

종계를 도입한 자는 매년 경제 능력검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4조(실시적용) 지정된 검정기관에서는 본 검정요령에서 정하는 검정실시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다만, 국공립기관은 예외로 한다.

## 제2장 일반검정

제5조(검정대상 및 방법 등) ① 축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계업등록을 위하여 축산법시행규칙 제6조의3 제3항에 의한 종축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계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종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서류심사시 외국으로부터 직수입한 종계(PL, GPS, PS 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계보증서(종계혈통서)를, 수입된 종계의 후대는 초생추 인수시 발행된 종계보증서로 검사하고, 국산종계는 육종농장에서 초생추 인수시 발행된 초생추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 확인서로서 검사한다.
2. 종계검사는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계는 현지 종계심사에서 그 종계의 특색과 마리수를 확인한다.
3. 종계 검사신청은 종계의 20주령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종계의 유효기간은 80주령까지로 한다.

② 일반검정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닭
2.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가 없는 닭과 이에서 생산된 닭
3. 가축전염병예방방법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

- 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닭
4.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을 동일계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 제 3 장 능력검정

제 6 조(능력검정방법) “순계검정”과 “경제능력검정”으로 구분 실시한다.

제 7 조(순계검정방법) 순계검정은 난용계와 육용계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제 8 조(난용종 순계검정) ① 산란용 순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40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수수는 계종당 암컷 800수, 수컷 2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관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검정계의 사양은 NRC 사양표준에 준하며 동일한 사육환경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항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③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율: 부화입란수에 대한 수정란의 백분비로 표시한다.
  2. 부화율: 수정란에 대한 발생수수의 백분비로 표시한다.
  3. 육추율: 첫 모이수수에 대한 8주령 수수의 비율로 한다.
  4. 육성율: 9주령 수수에 대한 21주령 수수의 비율로 한다.
  5. 성계생존율: 21주령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
  6. 첫산란일령: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산란 개시일령으로 한다.
  7. 첫산란체중: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산란 개시일령의 체중으로 한다.
  8. 40주령체중: 첫 모이준 날로부터 40주령 도달시의 체중으로 한다.
  9. 첫산란난중: 첫산란 개시일령의 난중으로 한다.
  10. 40주령난중: 첫 모이준 날로부터 38~40주령 사이의 평균난중으로 한다.
  11. 40주령 산란수: 첫 산란부터 40주령까지의 생존계 개체별 산란수로 한다.
  12. 질병조사: 각 개체별 질병발생사항 및 폐사 원인을 조사한다.
- ④ 선발은 주로 경제형질인 시산일령, 산란수, 난중 및 체중을 고려한 선발지수법에 의거 가계 및

개체선발을 실시하고, 선발수수는 계종당 200수(암컷 160수, 수컷 40수) 내외로 한다.

⑤ 계종당 가계조성은 25~30수 수컷가계와 수컷가계당 5~6수의 암컷가계를 조성한다.

⑥ 교배는 순수혈통 보존을 위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계종내 가계 교배를 실시한다.

⑦ 검정성적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조(육용계의 순계검정) ① 육용종 순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날로부터 40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는 계종당 암컷 1,000수, 수컷 1,0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관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검정계의 사양관리는 제 8 조제 2 항에 준한다.

③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율, 부화율, 육추율은 제 8 조제 3 항 1 호, 2 호, 3 호에 준한다.
2. 육성율: 9주령수수에 대한 23주령 수수의 비율로 한다.
3. 성계 생존율: 24주령 수수에 대한 검정 종료일로 수수의 비율로 한다.
4. 6주령체중: 첫 모이준 날로부터 6주 도달시의 체중으로 한다.
5. 23주령체중: 첫 모이준 날로부터 23주 도달시의 체중으로 한다.
6. 40주령체중: 첫 모이준 날로부터 40주령 도달시의 체중으로 한다.
7. 첫산란일령: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 산란 개시일령으로 한다.
8. 40주령 산란수: 24주령부터 40주령까지의 생존계 개체별 산란수로 한다.
9. 40주령난중: 첫 모이준 날로부터 270~280일 사이의 평균난중으로 한다.
10. 질병조사: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 원인을 조사한다.

④ 선발은 주경체형질인 6주령 체중, 체형, 초산일령, 산란수, 난중을 고려한 선발기준에 의거 가계 및 개체를 선발하며, 계종당 암컷 300수, 수컷 100수 계 400수 내외로 한다.

⑤ 계종당 가계조성은 30~60수 수컷가계와 수컷가계당 8~10수의 암컷가계로 조성한다.

⑥ 교배는 순수혈통보존을 위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계종내 교배를 한다.

⑦ 검정성적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실시한다.

제10조(경제능력검정방법) 경제능력검정은 산란계 검정과 육계검정으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제11조(산란계 경제능력검정방법) ① 산란용 실용계(C.C)를 검정 대상으로 하며, 동일계통의 종란 2,000개중에서 720개를 무작위로 추출 또는 검정기관이 같은 비율로 증감할 수 있으며 검정기관에서 자체 부화한다.

② 검정개시 수수는 전 ① 항에 의거 부화한 초생추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1개구를 250수로 하고 1반복당 50수로 5반복을 실시하며 검정기간은 첫모이 준 날로부터 72주령으로 한다. 단, 필요시 검정기관장은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검정계는 NRC 사양표준에 준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양관리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간중 도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시 검정기관장 판단하에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⑤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육추율: 첫모이 수수에 대한 8주령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육성율: 9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21주령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3. 성계 생존율: 22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4. 성성숙일령: 검정계군의 산란율이 연 2일 50%에 달한 전일의 일령으로 한다.
5. 산란율(Hen Day): 22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연생존수수에 대한 총산란 개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6. 산란지수(Hen Housed) 22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총산란개수를 22주령 개시일 수수로 나눈 개수로 표시한다.
7. 난중: 22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총 난중을 총 산란개수로 나눈 중량으로 표시한다.
8. 사료요구율: 22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계란 1kg생산에 소요되는 사료중량비로 표시한다.

9. 체중: 42주령 종료일 및 검정종료일에 측정된 검정계의 평균체중으로 한다.

10. 사료소비량: 첫 모이준 날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 소비한 사료의 총량을 표시하되 육추, 육성, 산란기별로 표시한다.

제12조(육계 경제능력검정방법) ① 육용종 실용계(C.C)를 검정대상으로 하여 동일계통의 종란 2,000개 중에서 72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되 필요시 검정기관이 같은 비율로 증감할 수 있으며 검정기관에서 자체 부화한다.

② 검정개시 수수는 전 ① 항에 의거 부화한 초생추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되 1개구를 240수로 하고, 1반복당 60수를 4개 반복으로 하며 검정기간은 첫 모이준 날로부터 6주~10주령으로 하되 단, 검정기관장은 검정개시 수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정계는 NRC 사양표준에 준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양관리 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간중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시 검정기관장 판단하에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⑤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율: 검정개시일에서 검정종료일까지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체중조사: 검정개시일로부터 2주간격으로 측정하되 최종조사는 검정종료일에 측정한다.
3. 사료소비량: 검정개시일로부터 2주간격으로 기간중 소비한 사료의 총량을 조사하고 최종조사는 검정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 소비한 사료의 총량으로 한다.
4. 사료요구율: 검정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생체중 1kg증체에 소요된 사료중량비로 표시한다.

제13조(검정결과 공표) 검정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한다.

## 부 칙

1. 본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철저한 추백리 검색으로 추백리를 뿌리뽑자**